

# 일제의 조선 석탄자원 지배 방식

김은정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연구원

## 1. 머리말

대한제국 정부의 근대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탄광개발은 일제의 통감부 설치 이후 궁내부 내장원의 평양탄광 경영권이 일본에게 박탈당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일본은 세계 신흥국의 진입 여부는 석탄자원의 장악 정도에 달려있다고<sup>1)</sup>며 대한제국의 궁내부 탄광 소유권을 무력화시키고 수중에 넣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 조선 석탄자원은 일제의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 식민지 수탈 자원으로 전락되었다. 일제는 조선의 석탄자원을 일본의 국가적 재산으로 간주하여 주요 석탄부존지를 조선총독부가 장악하였다.

근대 열강은 근대화 추진 목적으로 석탄 자원 확보를 경쟁적으로 서두르고 있었다. 뒤늦게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하려 했던 일제는 러일전쟁 후, 대한제국이 전략적으로 개발을 주도 하였던 평양탄광 경영을 강제로 중지시키고 그 경영권을 1907년 민영환을 총재하는 豊阜會社에 넘겨주었다. 같은 해 송병준을 총재로 하는 평양광업소<sup>2)</sup>로 이관시켜 침탈의 측면을 숨기려 하였지만 1910년에는 조선총독부가 평양광업소관제를<sup>3)</sup> 발표하며 완

1) 内田鯤五郎, 〈朝鮮に於ける石炭鑛業發展策〉, 《朝鮮鑛業會誌》 제13권 제22호, 1930, 3쪽.

2) 《皇城新聞》 1909. 12. 11 ; 1909. 12. 14. 평양광업소의 영업 목적이 일본해군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하였다.

전히 장악하였다.

이후 총독부는 조선 석탄자원의 장악과 수탈을 위해 일본 자본의 진출을 유도하고 유력 탄광을 대자본에게 할양하여, 유망한 석탄부존지는 1920년대 초에 이미 일본자본에 의해 장악되었다.<sup>4)</sup> 총독부의 보호 아래 조선의 석탄산업에 진출한 일본 대자본은 일본에서의 석탄채굴과는 다른 조건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일본에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 노동자가 자유롭게 농촌을 벗어날 수 없었다. 농촌에서 이탈한 노동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은 광업이었다. 노동자의 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노동조건 아래 광산노동자는 계절형 노동자로 활동하였다.<sup>5)</sup> 계절형 조선인 노동자는 탄광재해의 위험과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일본 자본의 이익 창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궁내부 소속 석탄자원을 자국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일제는 조선 석탄자원의 배타적 소유를 합법화하였으며 평양의 유망탄전을 경영하고 있었던 조선인 탄광까지도 일본자본에 모두 흡수시켜버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제의 조선 석탄자원 수탈을 합리화하는 법령제정과 그 법령에 관계한 제도 속에서 어떻게 일제가 일본 대자본에 탄광부존지를 양여하고 조선인 소유 탄광까지 합병하였는지 1910·20년대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3) 《朝鮮總督府官報》, 1910. 9. 30. 平壤鑛業所官制(칙령 369호)

4) 朝鮮銀行調査局, 《朝鮮ニ於ケル石炭ノ需給ト其ノ移用トニ就テ》, 1921, 81~82쪽.

5) 日本石炭株式會社 企劃部, 《朝鮮石炭鑛業事情研究》(朴慶植文庫, 2003년), 1941, 72~73쪽. (이후 《朝鮮石炭鑛業事情研究》로 약칭)

## 2. 제도 정비에 의한 석탄자원 지배 합법화

### 1) 朝鮮鑛業令과 관련 법률

광산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각종 법령은 통감부의 1906년 〈鑛業法〉 시행 이후 1915년 12월 〈朝鮮鑛業令〉, 1916년 2월 〈同施行規則〉이 제정됨으로써 일제의 광업침탈 기반이 확보되었다.<sup>6)</sup> 1915년의 〈조선광업령〉은 1906년 통감부가 제정한 한국광업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 자본의 지하자원 장악과 이에 따른 이익 환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1906년 〈광업법〉에서 외국인에게 허가했던 광업권을 1915년 〈조선광업령〉에서는 외국인 광업권 취득금지를 규정하였다. 일본 자본을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실상 식민지 조선의 광산자원을 일제가 독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sup>8)</sup> 일제는 1911년에서 1917년에 걸쳐서 대략적인 광상조사를 실시하고 1918년에는 지질조사소를 설치하여 광공업 약탈의 기초를 다져놓았다.<sup>9)</sup>

〈조선광업령〉 제 32조에 〈광업을 위해 필요한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 조선총독부의 권력으로 광업자원의 수탈을 합법화하였다. 탄광에 진출한 자본은 대부분 총독부의 보호를 받는 일본자본이었기 때문에 탄광개발 과정에서 발생하

6)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12월 24일 공포 1916년 4월 1일 시행.

7) 金燁, 〈朝鮮鑛業令을 論함〉, 《학지광》 14(7-2), 1917년 11월, 411~417쪽.

8) 《東亞日報》, 1921년 4월 5일, 〈朝鮮鑛業의 今昔〉; 李培鎔, 《韓國 近代 鑛業侵奪史 研究》, 245~254쪽.

9)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111~112쪽. 이 법의 요점은 ①광업권자는 종래 특허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제국신민 및 제국 법령에 의해 성립한 법인에 한함, ②구래의 광업권은 존속시킴, ③광물의 종류는 종래 17종에 11종을 추가함, ④광업상 필요한 토지의 사용이나 수용에 관한 토지수용령 규정을 준비함, ⑤광업권의 등록제도 설정 등이 있다.

는 주민과의 마찰을 고압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예가 많았다. 明治鑛業(주)의 沙里院 소재 鳳山탄광은 개광 초기부터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明治鑛業(주)이 채탄을 목적으로 점유한 토지 이외의 민유지까지 채굴하자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구타하고<sup>10)</sup> 민유지 만 여 평을 승낙도 없이 사용하는 등<sup>11)</sup> 일본 탄광회사의 광업령 확대적용에 의한 주민과의 마찰이 빈발하였다. 봉산탄광 이외에도 일본 자본의 탄광회사는 개인 토지 소유권을 쉽게 박탈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1915년 <조선광업령> 10조는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또는 광업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광업의 출원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총독부의 임의허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유망탄전을 일본인에게 차별적으로 허가하고 총독부가 보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어서 제정된 <朝鮮鑛業施行規則>(1916년, 조선총독부령 제9호), <朝鮮鑛業謄錄規則>(1916년 조선총독부령 제10호)으로 일본인의 광산 독점권이 보다 견고하게 보장되었다.<sup>12)</sup> 1918년에는 광업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금광, 은광, 연광, 철광 사금 및 사철에 대한 광산세 부과를 철폐하였다. 이것은 일본인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광산에서 채굴을 장려하려는 목적과<sup>13)</sup>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금, 은의 채굴을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1921년 12월 <조선광업령> 개정안에서<sup>14)</sup> 궁내부 소속 광산의 출원규정

10) 《東亞日報》, 1927. 1. 23. ‘賊反荷杖, 鳳山炭鑛’

11) 《東亞日報》, 1927. 8. 7. ‘민유지 만 여 평을 승낙 없이 사용’.

12) 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殖民地 支配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106쪽.

13) <朝鮮鑛業令>, 1918년 12월 16일 개정(制令 제17호) 광업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1 조 제 1항에 다음의 단서 추가. 다만 금광, 은광, 연광, 철광, 사금 및 사철에 대하여는 광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朝鮮鑛業令>, 1921년 12월 28일 개정(制令 16호) 제41조 제2항에 다음의 광구세 할인 내용 개정.

도 選別主義에서 先願主義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미 궁내부 소속의 주요 탄광은 선별주의에 의해 일본 대자본에 양도된 후였다.<sup>15)</sup> 또한 광업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3개년은 반액으로 할인하여<sup>16)</sup> 식민지 자원 증산을 독려하려는 목적도 드러내었다.

광업령 이외에도 일제는 조선의 광산물 약탈을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였다. 조세에 의한 수입증세의 제한을 풀기 위하여 무관세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일제하 관세정책은 일본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고 조선을 일본에 종속된 단일경제권으로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관세를 지향하였다. 관세장벽 철폐는 일제상품이 무관세로 조선에 쉽게 침투하고 역으로는 조선의 식량과 자원을 저렴하게 유출시키는 기능을 했다. 1912년 <정률령>에서는 8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수이출세가 폐지되었으며<sup>17)</sup> 1919년에는 수이출세가 완전히 폐지되었다.<sup>18)</sup> 따라서 일본

15) 김병관, <일제하 한국 석탄광업 노동에 대한 사적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7. 13쪽. 1921년 이전에 총독부가 양도한 주요탄광 大寶, 大成, 江東, 貞柏탄광인데 이 곳의 자본은 三菱, 安川·宋本, 동척계열이었다. 1923년도 이들의 생산량이 전체 무연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3%에 불과하지만 해군성 소속 평양탄광을 제외한 민간 생산량의 53.8%를 차지하고 있었다.

16) 《朝鮮總督府施政年報》, <鑛業行政>, 1922, 266~268쪽.

17) 정태헌,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역사비평사, 1996, 100~106쪽. 1912년 <정률령>에 제외된 항목은 소맥, 대두, 소두, 任胡麻子, 生牛, 우피, 석탄, 철광이었다. 수이입면세대상으로 지정된 30가지 물품은 官需用 및 군수용품, 광산업에서 금·은·동의 채굴 및 채취사업에 필요한 물품(기계, 기구, 폭발약, 화학연료) 등이었다. 1년 안에 수출하는 물품도 수이입세 면제대상이었다.

18) 위와 같음. 1915년 <정률령>개정에서는 광공업을 위한 세제특혜 확대조치로서 수이입세 면제대상 품목으로 종래의 금,은,동 채굴용 물품 외에 철이 추가되었다. 일본에서 철 가공을 위한 제련공업 건설이 요구됨에 따라서 제련사업에 용해제로 사용되는 염기성 광물에 대한 수이입세를 면제했다. 1918년 개정에서는 철의 채굴에 필요한 물품이 석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일본경제와의 연관 속에서 공업부문의 연료수급에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 조선 사이의 물자 이동은 아무런 조세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1929년에는 <資源調査令>을 통해 군사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군수공업  
을 급속히 확대시켰다.<sup>19)</sup> 제 1조 <정부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이에 관한 보고 또는 실지  
신고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자원조사를 위해 법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  
게 하였으며 제 2조에서 <자원의 통제운용계획의 설정 및 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입회, 검사하고 조사 자료제공을 구하  
거나 관계자에 질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 6조에 <직무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조사 자료 제공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  
허위 진술을 했을 때는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까지 있어서 비협조자에 대  
한 강제조항을 두었다. 또한 제 7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절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원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이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엄격한 규제를 하였다.

<자원조사령>은 1919년에 제정되었던 <軍需調査令>을<sup>20)</sup> 포함하였으  
므로 이에 <군수조사령>은 폐지되었다.<sup>21)</sup> 자원조사령의 성격이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군수조사령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자  
국의 목적에 맞게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 후 식민지의 자원을 약탈하고  
종국에는 군사전략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였다.<sup>22)</sup>

19) <資源調査令>, 1929. 4. 11. 조선총독부법률 53호

20) 《朝鮮總督府官報》, 1919. 12. 27. 1919년 12월 15일에 군수조사령을 공포 즉일로  
시행하였다.

21) 《中外日報》, 1929. 11. 8. ‘資源調査會와 資源調査令發布 軍需調査令은 폐지’

22) 1938년에는 ‘朝鮮重要鑛物增産令’을 전조선의 광물자원의 군수목적에 철저하게  
이용하였다.

## 2) 석탄 자원 조사

일제는 1905년 11월, 농상공부 산하에 광상조사기관을 설치하고 평양지역 무연탄광과 함경북도, 경상북도 탄전을 조사하였다.<sup>23)</sup> 특히 대한제국이 프랑스자본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었던 평양탄광에 대한 조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강제병합 이후 일제는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광무과에 광상조사계를 두고 1911년부터 전조선에 걸쳐 광상조사를 개시하여 1917년에 대략적인 조사를 마쳤다.<sup>24)</sup> 1918년에는 地質調査所를 두어 사무를 개시하고<sup>25)</sup> 광물자원의 체계적 수탈을 위해 광상조사를 제도화하였다.<sup>26)</sup>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식산국에 燃料選鑛研究所를 설치하였다.<sup>27)</sup> 연료선 광연구소는 탄전조사 이용방법의 조사연구, 기타 연료의 조사에 관한 사

- 
- 23)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朝鮮に於ける地質及鑛物資源調査沿革〉,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雜報》 제 1호, 1936년 10월, 4~5쪽.
- 24)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위의 글, 4쪽. 일반지질의 개략적인 조사 실시하여 각도별의 일반지질 및 광물자원에 관한 사항은 〈朝鮮鑛床調査報告〉로 보고되었으며, 조선의 석탄, 동운모 등 특수한 광물에 관한 사항은 〈朝鮮鑛床調査要報〉를 발간하였다. 이후 지질조사소 개설 후에도 특별히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특별히 평양무연탄층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있었다.
- 25)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조선편, 제5분책, 1956, 73쪽.
- 26) ‘지질조사소’는 5만분의 1지질도 작성을 시작하여 1938년까지 총 19집의 지질도를 완성하였다. 이 외에도 《朝鮮鑛床調査報告》는 1917년부터 1929년까지 19책을 발간하였고, 《朝鮮鑛床調査要報》는 1916~1942년까지 21책이 발간되었다.
- 27) 《매일신보》, 1922. 11. 3. ‘연료선광연구소 사업과 사무규정내용’ 1922년에 연료선광연구소의 준비사무를 완료하고 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예산 및 사업내용은 석탄의 조사시험비로 35만 1천원, 기사 7인, 1인 기수, 선관제련비 6만9천원, 이에 대한 人員技師1인, 技手3인을 두어 또 선광제련시험실 건축비 3만원 및 석탄시험실 신축비 6만9천원을 예상하였다. 지표조사는 함복산 유연탄은 이후 2년 이내, 평남산 무연탄은 1년 이내 조사를 완료한 후, 지하조사는 그 후 매년 이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함복 3만, 평남 1만으로 구성하였다.

항 및 선풍제련시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sup>28)</sup> 연료 선풍연구소의 탄전 조사 지역은 함북과 평남에 집중되어 있었다.<sup>29)</sup> 연료 선풍연구소는 개략적인 지질조사소의 조사보고서를 보충하고 석탄부존 상태와 석탄의 매장량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일본자본에게 조선의 풍부한 석탄자원을 소개하고 조선석탄자원 장악을 위한 자본 유도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sup>30)</sup>

총독부는 1922년에 조선전도의 지표조사를 통해 광물조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며 광물분포상황도를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등, 일반인의 광산 채굴을 장려하려 하였다.<sup>31)</sup> 광상조사 완료를 알리는 날 ‘탄전조사를 위해 기사, 기수 등 약 30명으로 5반을 나누어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 탄전조사와 지질조사를 행한다’는 기사를 볼 때,<sup>32)</sup> 광상조사의 주목적이 금광을 중심으로 한 조사였다면 탄전조사는 금광조사를 마치고 난 후의 사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료선풍연구소는 형식상 ‘조선산업조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으로서<sup>33)</sup> 금광업개발에 치중되었던

28)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年史》, (1924. 5. 5.) 조선총독부연료선풍연구소 개청식이 거행되다.

29) 조선총독부, 《朝鮮の石炭鑛業》, 1929, 35쪽. 연료선풍연구소는 탄전조사, 조선탄의 이용시험, 유용광물의 처리방법시험 등을 위해 설립됐다. 1917년 일본인 거상 에이키(鈴木)가 노랑진에 세웠던 선풍제련소가 제 1차 세계대전 후 광산물 수요격감으로 가동을 중지하자 이를 조선총독부가 인수하여 1922년에 연료선풍연구소로 명명하였다.

30)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朝鮮に於ける地質及鑛物資源調査沿革〉,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雜報》 제 1호, 1936년 10월, 11~12쪽. 조사결과 〈選鑛製鍊試驗報告〉(1~25회), 〈石炭試驗報告〉(1~6권), 〈朝鮮炭田調査報告〉(1~10회)를 발표하였다.

31) 《매일신보》 1922. 5. 25. ‘鑛床調査終了’. 식민지 지배 초기의 광상조사는 금광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소규모 금광도 일반인을 상대로 채광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광상 조사 정보를 제공하였다.

32) 《매일신보》 1922. 5. 25. ‘탄전조사 래월 중 발령’

33) 유승렬, 〈일제의 노동공업지배와 노동계급의 성장〉, 《한국사론》, 23. 1991. 80

1910년대의 광업정책을 1920년대 탄광 개발까지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up>34)</sup>

즉 1922년에 연료선풍연구소가 설치된 것은 본격적인 탄전조사활동과 궤를 같이 한 것이었다.<sup>35)</sup> 조선총독부는 석탄의 부존량 및 광상상태를 조사하여 조선의 연료 및 동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명목을<sup>36)</sup> 표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연료문제 해결이 그 중대한 사명이라고 하였다.<sup>37)</sup> 즉, 조선에서 석탄자원의 개발 목적은 식민지 모국의 연료지원이 궁극적인 것이었다.<sup>38)</sup>

조선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수요, 이용에 대한 일제의 보고는 1920년대에 들어 더욱 구체화되었다.<sup>39)</sup> 조선 내의 석탄 이용상황 조사를 위해 평

---

~86쪽. 1922년에는 朝鮮産業祖師會에서 鑛業助長策을 결정하며 석탄채굴의 권장을 주요사항으로 언급하였다. ①현재 시행 중의 지질조사를 가급적 속히 완료할 것, ②광업에 관한 생산비 경감의 방법을 찾을 것, ③기술의 응용을 보급할 것, ④광석 처리시설의 보급, 개선을 꾀할 것, ⑤갱부의 보호 取締를 주도하게 할 것, ⑥보유금산을 민간에게 개방할 것, ⑦석탄의 산액 및 이용의 증진을 꾀할 것, ⑧탄전의 조사, 석탄의 이용 시험은 신속, 철저히 시행할 것, ⑨석탄의 이용 시험은 제한 없이 널리 자유로이 시행할 것.

34) 朝鮮總督府, 《官廳に於ける石炭消費狀況》, 1928, 3쪽. 1922년 조선탄전의 부존상태, 매장량 등을 조사. 매장량은 의외로 많아 유연탄 5억톤, 무연탄 7억톤 추정하였다.

35) 《동아일보》, 1927. 2. 7. ‘연료연구소관계로 동민은 불안공포, 주민은 필경 당국에 진정’ 시흥에 있는 연료선풍연구소는 연구소에서는 연구소에서 날려 오는 각종 분진과 회가루, 열기 등으로 음식과 침구까지 오염을 입는 상황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연료선풍연구소는 1922년 노량진 설립되었으나 이후 시흥에도 건립되었다.

36) 조선총독부, 《施政三十年史》, 1940, 181쪽.

37) 《매일신보》, 1924. 5. 6. ‘연료선풍연구소 개칭’ 일본의 연료선풍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임무와 사명은 극히 중대한 것이며 연료선풍의 문제는 일본의 사활관계가 되는 까닭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38) 《조선일보》, 1934. 12. 5. ‘공업상으로 본 석탄의 장래관 1’

壤, 安州, 江西, 元山, 羅南, 會寧, 咸興 등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 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sup>40)</sup>

연료선광연구소는 개소 후 3개의 全鮮炭田調査班을 구성하고 활동하였다.<sup>41)</sup> 그 결과 1940년까지 모두 14권에 이르는 <朝鮮炭田報告>가 작성되었다. 연료선광연구소의 광상 조사는 조선산 석탄으로 조선 내 소비고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에서 채굴되는 양질의 석탄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본으로 수출되지 않는 저질의 석탄만으로 식민지 운영연료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연구소의 실질적인 목적이 되었다. 이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각종 조선탄과 외지탄 결합을 통해 이용 가능한 배합을 설명하였다.<sup>42)</sup>

또한 연료선광연구소의 설립으로 각종 수수료 수입도 발생하였다. 광업의 출원 및 허가를 위해서는 연료선광연구소의 유료분석이 필요한데 그 분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었다. 1932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여 1935년 4, 5월 두 달에 분석한 건수가 6,000여 건에 이르고 있었다.<sup>43)</sup> 광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조선인에

---

39) 朝鮮銀行調査局(1921), 《朝鮮ニ於ケル石炭ノ需要ト其ノ利用ト就テ》; 朝鮮總督府(1929), 《朝鮮炭の利用に就て》; 朝鮮總督府(1929), 《朝鮮の石炭鑛業》 등이 있다. 석탄 부족 자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조선 석탄자원의 이용가치와 품질에 대한 평가를 일본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40) 조선은행조사국, 《朝鮮ニ於ケル石炭ノ需要ト其ノ利用ト就テ》, 1921, 24쪽. 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석탄은 無煙炭, 有煙炭, 褐炭, 泥炭으로 분류하였다. 泥炭은 고탄소화가 적어 발열량이 평양무연탄의 약 50%에 이르고 갈탄에 60~70%에 해당하지만 니탄의 수분을 건조시켜 조선 내에서 쓰면 적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선의 무연탄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선의 무연탄을 연료로 만든 연탄은 발열량이 높아서 열발생용으로 적당하고 갈탄은 수이입탄에 비해 발열량이 우수해 이것을 가공하면 좋은 연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41) 《매일신보》, 1924. 5. 6. ‘연료선광연구소 개청’

42) 조선총독부, 《朝鮮炭の利用に就て》, 谷岡商店印刷部, 1929, 6~7쪽.

43) 《동아일보》, 1936. 4. 5. ‘팰드·릿쉬의 절정! 분석료 20만원, 양월간 의뢰만 6천

대해서는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고액의 광업세를 부과하였다.<sup>44)</sup> 물론 이러한 적용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다.

### 3) 광업권의 先願主義, 選別主義

1906년 광업법 제 8조 先願主義에 의해 <광업을 출원하는 자가 동일한 지역에 2명 이상일 경우 원서가 도달한 날이 빠른 자에게 그것을 허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내부 소속의 광산은 위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選別主義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sup>45)</sup> <農商工部大臣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허가 한다>(제25조)는 규정을 두어 공내부 소속의 우수한 광산에 대해서는 조선인 누구에게나 先願主義에 입각하여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내부 소속 광산에 대해서는 <本法 施行 細則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의해 <일본통감부의 동의를 얻도록>(제 27조)<sup>46)</sup>하여 平壤, 三登, 江東탄광을 포함한 26개의 공내부 소속광산은 先願主義 적용을 받지 않고 農商務省이 소유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이 자국의 근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보유해 두었던 유망한 광산에 대해서 일제는 선원주의에서 제외시켜 한국인의 광업권 선점을 막고 결과적으로 1910년 이후 총독부에 완전히 소속시켰다.

또한 일제는 선원주의에 의해 신청만 하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하여 조선인을 광업 열기 속으로 몰아넣고 광업개발에 이용하였다. 조선지하자원의 특징은 광물의 종류와 광상수가 많고 또 분포가 넓어

---

여건'

44) 《東亞日報》, 1934. 8. 19. '황금광 시대' 7개월간 출원 광구가 5천여 건이며 미처 분 광구의 수수료만으로도 200여만 원을 돌파하였다.

45)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V, 590~595쪽.

46) 日新國政, 《朝鮮鑛業行政近代史 1,2,3,4》, 《朝鮮鑛業會誌》, 제 2권 5·6·7·8 호, 1919.

광상개발에 다수의 조선인 참여가 필요하였다. 일제는 일반 민중의 광물 발견 의욕을 자극하여 비교적 광상 기술수준이 낮은 조선에서 예상 이상의 생산을 얻는 원인이 되었다<sup>47)</sup>고 평가하였다.

광업권을 물권으로 등록등기하게 하였는데 여기에도 번잡한 수속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 중 막대한 수수료가 징수되었다.<sup>48)</sup> 1939년 자료에 출원수수료는 1건 당 100원이었는데,<sup>49)</sup> 1933년 광산의 노동자 1일 평균임금이 50전이었으므로 출원 등록 절차만으로도 막대한 세금 징수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1910년 후, 일본인의 출원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조선인의 출원건수는 점차 감소되었다. 특히 1916년 광업령 공포 후에는 출원건수에서 일본인 우위로 반전되어 <조선광업령>제정이 조선인의 광업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1920년 조선인 출원건수에 대한 허가 비율은 16%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도 석탄광업에서 조선인의 출원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출원허가뿐 아니라 가행에 있어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1923년 37개의 석탄광구가 가행되고 있었는데 그 중 조선인이 가행한 것은 1개에 불과하였다.<sup>50)</sup>

1917년의 광업출원 총 건수는 6,189건으로 1911년의 약 8.91배, 허가 총광구수는 1,233광구로 1911년의 3배, 가동 총광구수는 563광구로 1911년에 비해 2.7배, 1918년의 광산총액은 3,083만으로 1911년에 비해 약 5배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같은 시기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로 보면, 광업 출원건은 34%, 66%, 가동광구수는 26%, 72%인데, 광산액은

47)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조선편, 제5분책, 1956, 78쪽

48) 《中央日報》, 1933. 2. 10. ‘黃金狂時代’ ; 《朝鮮中央日報》, 1934. 1. 1. ‘果然黃金狂時代’ ; 《朝鮮鑛業會誌》, 1918. 5월호.

49) 小杉嚴·寒川俊太郎 공저, 《朝鮮鑛業出願手續及經營指針》, 厚生閣, 1939, 61쪽.

50) 조선총독부 식산국, 《朝鮮の鑛業》 1923년, 부록. 1917년 조선인의 석탄출원 5건 중, 허가건수는 1건으로 같은 해 일본인이 출원 135건, 허가 13건이었다.

1%, 80%여서 조선인 소유의 광산이 얼마나 영세한 것인지 알 수 있다.<sup>51)</sup>

〈표 1〉 민족별 광업권 출원 및 허가 건수, 광산액 비교

년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허가/출원	가동/광구	광산액/%	허가/출원	가동/광구	광산액/%	허가/출원	가동/광구	광산액/%
1911	207/291	90	296/4.8	190/378	103	1,401/22.6	5/23	14	4,488/72.6
1912	121/207	82	181/2.7	196/397	94	1,683/24.7	9/29	18	4,949/72.6
1913	135/215	104	276/3.4	207/385	150	1,934/23.7	10/10	30	5,987/73.0
1914	93/179	84	313/3.7	214/358	195	1,783/20.9	1/5	22	6,425/75.4
1915	157/403	108	384/3.7	205/381	182	2,820/26.8	18/30	19	7,311/69.5
1916	308/1,081	172	1,042/7.4	422/1,932	290	3,622/25.7	72/74	16	9,413/66.9
1917	461/2,098	144	857/5.1	762/4,091	404	7,615/44.7	-	15	8,584/50.2
1918	367/807	94	299/1.0	621/2,526	434	24,673/80.1	-	6	5,865/18.9
1919	134/138	36	78/0.3	228/884	287	19,767/77.8	-	5	5,568/21.9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박경식, 위의 책, 113쪽 참조

위의 〈표 1〉을 보면, 1915년 광업령 발표로 인해 조선인에게 광업 열풍이 불어 출원건수가 폭등하는 경향을 잠시 보였지만 광업령의 허상이 드러난 1910년대 후반부터 열기는 식고 출원건수도 감소하였다. 광산액으로 비교해보면 일본과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는데 전체 광산액에서

51) 박경식, 위의 책, 112~113쪽.

차지하는 조선인의 비율은 1911년 4.8%에서 점차 줄다가 1919년에는 0.3%라는 미미한 수치에 머물렀다. 그러나 일본은 1911년에 22.6%에 불과하였으나 조선광업령의 발표 후 외국계 광산회사의 침입을 막고 일본 자본을 보호하면서 점차 외국인 광산액을 잠식하였다. 1918년 광산액은 일본인이 80.1%를 차지하고 외국인은 18.9%가 되어 1911년의 상황과 역전되었다. 일본은 외국인 소유의 광산을 차지하고 조선인 자본의 광업 투자를 막아 광산업에서 일본인의 우월적 장악을 조성하였다.

탄광의 경우, 조선인 자본을 배제한 일본 자본의 장악은 더욱 철저하였다. 탄광의 민족별 가행 및 휴업 광구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민족별 석탄광 가행건수

	조선인		일본인	
	가행	휴업	가행	휴업
1910	-	-	-	-
1912	4	6	9	34
1914	1	10	15	43
1916	2	7	13	52
1918	-	11	27	76
1920	-	14	24	300
1922	-	8	32	475
1923	1	12	36	451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3，112~117쪽(鑛業).

1918, 1920, 1922년에는 조선인 가행건수가 ‘0’이었다. 가행건수가 1923년에 일본이 36건인데 반해 조선인 가행은 1건에 불과했으며 1923년 생산액은 일본에 비해 0.1%에 불과하였다.<sup>52)</sup> 휴업중인 광구 조사는 그 목적이 1915년 광업령 제 29조에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휴업할 때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자금이 부족한 영세 광업권자가 휴광상태를 유지할

52) 〈最近朝鮮鑛業概況〉, 《朝鮮鑛業會誌》, 제13권 11호, 1923년 11. 11~14쪽.

때 광업권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조선인이 비용을 들여 출원수속을 마쳤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1920년 총 출원수 1,132건 중 허가건수는 373건으로 29%, 1925년 총 출원수 972건 중 허가건수는 278건으로 29%, 1930년 총 출원수 1,392건 중 허가건수는 341건으로 24%, 1935년 총 출원수는 10,153건 중 허가건수는 1,445건으로 14%에 불과하였다.<sup>53)</sup> 출원수속이 빈발하는 지역에 대한 지하자원의 정보를 입수하고 허가는 총독부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즉, 조선인을 선동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대행시키고 연구 소나 조사소를 만들어 이것을 인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광업령 (제7조)에 광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조선총독에게 鑛區圖를 첨부한 원서를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업출원인은 출원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단 사금, 사석, 사철은 그러하지 않다.<sup>54)</sup>

광업령 제 7조에 의거해 광업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비용을 들여 광상을 조사한 후 광업도를 첨부하고, 부존자원이 무엇인지 증명해야 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법령제정만으로 출원이 빈번한 지역의 광상조사를 하는 셈이었다. 탄광채굴을 위한 출원수속의 절차는 결과적으로 일반 민중에게 제반조사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한 법률제정과 등록 수수료, 출원료 등의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조사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출원 지역을 통해 유망 광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53) 《朝鮮の鑛業》, 《朝鮮鑛業の趨勢》, 《朝鮮總督府通計年報》 각 년도판.

54) 〈朝鮮鑛業令〉 1915년 12월 제령 8호.

### 3. 일본 대자본의 탄광 장악

#### 1) 조선총독부의 일본 탄광자본 보호

일제는 선진 제국주의국가들과의 경쟁을 피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광물약탈에 더욱 집중하였다. 일제는 1918년에 地質調査所를 설치하고 1922년부터 燃料選鑛研究所를 설치해서 탄전을 비롯한 금광, 철광 등 각종 광산의 부존상태를 조사하였다.<sup>55)</sup> 1920년대 초반까지 석탄수탈을 위한 법령제정과 각종 자원조사기관, 연구기관을 설립해 석탄자원의 부존량, 부존지, 자원의 활용도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1920년대부터 일제는 일본자본에 의해 석탄광 개광과 석탄 이출을 획책하였다. 다음 <표3>을 보면 1921년 당시 조선의 주요 탄전은 이미 그 권리자가 모두 일본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56)</sup> 일본인 개인소유 탄광은 鳳山炭鑛과<sup>57)</sup> 鳳儀탄광 2개의 탄광이 있었으나 이 탄광 역시 白石·大川系의 朝鮮合同炭鑛에 합병되어 일본 대자본 중심의 탄광 소유가 일반화되었다.<sup>58)</sup>

1910년대 大寶탄광의 5광구를 三菱에 불하한 사실은<sup>59)</sup> 조선에서의 탄광개발은 일제의 대자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는 조치와 같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호황이 지속되자 1919년에는 각지에서 탄

55) 조선총독부, 《朝鮮の石炭鑛業》, 1929, 35쪽.

56) 조선은행조사국, 《朝鮮ニ於ケル石炭ノ需給ト其ノ移用トニ就テ》, 1921, 81~82쪽.

57) 《동아일보》, 1920. 8. 23. ‘西鮮의 2탄광’ 鳳山탄광주식회사, 자본금 200백만원으로 설립되었다. 실제 봉산탄광은 1905년에 탄맥이 발견되어 《매천야록》 제 4권에 봉천군의 봉천탄광의 발견이 기록되어 있다.

58) 朝鮮總督府殖産局鑛山課, 《朝鮮鑛業の趨勢》 1936년.

59) 조선은행조사국, 《朝鮮ニ於ケル石炭ノ需給ト其ノ移用トニ就テ》, 1921, 81~82쪽.

광 가행 개시가 급증하였다. 1918년과 비교한 1919년의 허가건수는 64%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平壤, 江東, 大寶의 각 탄광은 규모상 급격한 팽창을 보였다.<sup>60)</sup>

〈표 3〉 1921년 조선의 주요 탄전

탄광명	권리자	위치	탄량(천톤)	출탄고 1919, 1920
平壤鑛業所	조선총독부	평남 대동군	200,000	128,274톤(19년) 120,000톤(20년)
大成탄광	明治鑛業會社 (安川·松本)	평남 강동군	13,937	- 1,364
江東탄광	朝鮮電氣興業會社 (동척)	평남 강동군	8,399	3,884 5,922
長水院탄광	久原鑛業會社	평남 대동군	6,764	8,129 5,922
大寶탄광	三菱製鐵會社 (三菱)	평남 대동군	37,362	32,983 31,166
江西탄광	朝鮮無煙炭鑛會社	평남 강서군	35,796	30,000 34,397
安州탄광	明治鑛業會社	평남 안주군	32,818	29,915 31,371
鳳山탄광	加藤爲二郎	황해도 봉산군	26,477	- 3,000
咸興탄광	咸興炭鑛鐵道會社	함남 신흥군	21,112	13,589 20,000
生氣嶺탄광	生氣嶺炭鑛會社	咸北 鏡城군	24,273	19,660 30,000
鷄林탄광	鷄林炭鑛會社	함북 회령군	124,211	4,742 34,346

60) 《朝鮮鑛業の趨勢》, 1927, 5쪽, 43쪽.

鳳儀탄광	財滿精三	함북 회령군	27,575	280 1,738
會寧탄광	朝鮮採炭會社	함북 회령군	760	5,267 6,000
古乾原탄광	麻生鑛業會社	함북 경원군	31,380	227 224

〈출전〉 조선은행조사국, 《朝鮮ニ於ケル石炭ノ需給ト其ノ移用トニ就テ》, 1921, 81~82쪽.

1919년 6월 朝鮮電氣興業株式會社は 평양 강동군 내의 총독부 보유광구 허가를 받아 1920년에는 江東炭鑛을 개광하였다. 明治鑛業株式會社の 평양 大成炭鑛도 1919년에 개광명령을 받았다.<sup>61)</sup> 따라서 1920년에 대체로 국내의 주요탄광은 일본 대자본에 불하가 완료된 상황이 되었다.<sup>62)</sup> 즉, 평양지역에서 무연탄 채굴은 平壤海軍炭鑛을 시작으로 해서 조선총독부 보유탄전의 무상불하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sup>63)</sup>

1920년에서 1929년까지의 조선광산업은 금은광의 전국적 채취와 평양 지역의 무연탄 채굴에 집중되었다. 금은광산은 일제가 대외 지불수단의 보충을 위해, 무연탄광은 일본해군의 기선 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산에 노력했던 광산물이었다. 조선총독부는 평양 주변의 보유광구인 大同, 江東, 江西, 順天, 价川郡에 대략 6 억 만 톤의 매장량을 추측하고 조선에서의 일 년 석탄소비량이 100만 톤이므로 평양주변의 석탄으로 60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었다.<sup>64)</sup> 일제는 평양주변 탄광 채굴만

61) 《朝鮮石炭鑛業事情研究》, 13쪽.

62) 平壤商工會議所調查課, 〈平壤無煙炭概觀〉, 《平壤無煙炭資料集成》, 平壤商工會議所刊, 1942, 11쪽. 1921년 이전에 총독부가 양도한 주요 탄광은 다음과 같다. 1913년에 대보탄광(三菱), 1918년에 大成炭鑛(安川·松本계, 明治鑛業), 1919년에 江東炭鑛, 貞柏炭鑛(東拓, 朝鮮電氣興業)

63) 《朝鮮石炭鑛業事情研究》, 15쪽.

64) 《東亞日報》, 1926, 1. 16.

으로도 식민지 경영과 일제의 원료지원에 충분하다고 여겨 이 지역 석탄 산지의 일본 대자본 장악을 통해 채탄율을 올리고 그 이익을 확보하려 하였다.

1920년대 초반 총독부에서 파악한 조선의 석탄 자원 부존지는 평남의 무연탄, 함북의 유연탄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sup>65)</sup> 이 외에 강원도 소재 삼척 탄광은 구한말에 이미 왕실소유 탄전이었으나<sup>66)</sup> 통감부의 침탈 후, 조선 총독부가 장악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1938년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 강화와 더불어 삼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일본전력에 불하되었다.<sup>67)</sup>

대규모 탄광 경영자는 1920년대 초까지 日本海軍省, 朝鮮電氣興業株式會社, 朝鮮無煙炭鑛會社, 三菱鑛業株式會社, 帝國炭業會社가 있었다.<sup>68)</sup> 대자본의 진출은 금은광에 비해서 석탄광에 더 집중되었으며 채굴 보다는 유망 탄전을 장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연료선광연구소에서 1927년에 유망성을 발표한 高原탄광은 1929년에 片倉系가 우선 장악하고 있다가 1938년에 와서야 大東鑛業社를 설립하고 채탄을 시작하였다.<sup>69)</sup>

대자본 불하과정을 보면 1920년대 연료선광연구소가 각 탄산의 유망성을 발표하고 일본의 대자본이 각 탄전을 보유할 수 있는 절차적 배려를 통해 개발이 미뤄지더라도 일본자본의 독점적 지배를 용인해주었다.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석탄 증산이 시급하였던 1930년대에 총독부는 보유탄전

65) 西村保吉, 〈朝鮮의 産業에 關한 方針〉, 《時事評論》 1, 1922년 7월 63쪽.

66) 〈各部請議書存案〉 06, 규 1775, 의정부편, 28책, ‘43郡各礦移屬官內府請議書’.

67) 平壤商工會議所調査課, 〈平壤無煙炭概觀〉, 《平壤無煙炭資料集成》, 平壤商工會議所刊, 1942, 12쪽.

68) 이기수, 〈경제사〉, (전석담·최윤규(1989), 《조선근대사회경제사》, 이성과 현실) 428쪽. 1925년 년산액 10만원 이상의 광산은 29개였는데 그 중 금은광 9개, 철광이 7개, 탄광은 12개, 동광은 1개였다.

69) 《朝鮮石炭鑛業事情研究》, 51쪽. 위치는 평원선을 따라서 함남, 평남의 道坑이다. 교통 때문에 비교적 편리해서 갱소와 영의 사이에 현재 자동차가 있지만, 장래 輕便 철도를 부설할 계획이었다.

의 채탄을 강요하였다. 1930년대 말 총독과 정무총감 등의 훈시를 보면 각 기업이 투자의 개념으로 조선의 탄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채탄을 미루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sup>70)</sup>

1920년대 광업은 일제의 수탈 증산정책에 따라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금광물은 외국인이 경영하는 광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철광 생산량은 1928년 생산량이 81만 톤에 달했다. 무연탄은 일본정부(해군성)의 관할 하에 있던 사동탄광 13만톤, 기타 탄전에서 32만 톤이 생산되었다. 유연탄은 36만 톤이 거의 국내에서 소비되었다. 흑연은 일본의 군사적 수요와 결합되어 제1차 세계대전에 이미 5천만 톤이 생산되었고 1928년에는 1만5천 톤에 달했다.<sup>71)</sup> 즉 일제의 조선 광산 개발은 192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전쟁 목적과 연관되어 급격히 확대되었다.

1930년대 초반부터 중소 규모의 일본자본 진출이 증가하다가 1930년대 말이 되면 日本鑛業, 三菱鑛業, 住友 등 일본 재벌계 광업회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규모가 작은 광산 회사는 급속히 대자본에 흡수되었다.

## 2) 조선인 경영 탄광의 흡수

조선인 석탄광업 자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29년 9월 7일에는 경북 聞慶郡 소재 석탄광 947,020평의 광업권을 朴南德이 설정하였던 기록이 있다.<sup>72)</sup> 광업권 설정뿐 아니라 회사설립까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和順無煙炭(주)는 1930년 6월 朴泳孝가 설립한 것으로 당시 자본금 20만원(불입금 5만원)의 순 조선인 회사였다.<sup>73)</sup> 그러나 이 회사는 1935년

70) 《朝鮮總督府官報》, 1939. 4. 19. 大野정무총감 훈시.

71) 《朝鮮의鑛業》, 《朝鮮鑛業의趨勢》, 1928년.

72)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9월 14일, 29년 9월 7일 경북 문경군 소재 석탄광 947,020평 박남덕이 광업권 설정.

73)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1년, 和順無煙炭(株) 대표 박영효, 이사 朴景熙, 姜性和. 감사 朴元熙, 趙鍾源 1930년 6월 6일 설립.

三井계열 鐘淵紡績의 全南鑛業(주)에 흡수되었다.<sup>74)</sup> 또한 1936년 9월에는 조선인 金桂祚가 경영하는 (전체주식의 37.5% 소유) 자본금 120만원 (불입금 120만원)의 會文炭鑛(주)이 설립되었으나<sup>75)</sup> 1939년에 東拓鑛業(주)에 이양되었다. 조선인 탄광회사는 일제 자원통합정책에 의해 독자적인 개발이 불가능하였다.

이 외에도 1910년대에 등록된 광구 광업권자 중 조선인은 전국에 걸쳐 유망한 탄산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192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평남의 무연탄 산지와 함북의 유연탄 산지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1915년의 《朝鮮鑛口一覽》에서는 평남 강서군의 탄광을 尹基益·李相弼·李明九·鄭觀朝·趙鍾緒가 합동으로 경영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慶北 迎日郡 에 弘淸三, 朴基敦, 吳興善, 金錫夏, 李相和·中村孝志, 경주군의 金震東, 林姓女, 평남 安州郡의 韓泰淳, 강원 通川郡의 魚允直·崔鍾崙, 함남 신흥군 柳秉龍·朴駿燮·朴泰坤, 함북 경성군의 朴龍緒·南星祐, 회령군의 全濟德 등이 있었다.<sup>76)</sup> 함북 경성과 회령 등 유망 탄광을 조선인이 장악하고 채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15년까지만 하여도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함북과 평남 등지를 포함하여 유망한 석탄산지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명이 자본을 합하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74) 《東亞日報》, 1934년 5월 22일. ‘和順無煙炭 鐘紡이 買收’ ; 정근식, 〈일제하 鐘淵紡績의 잠사업 지배〉, 《한국 근대농촌사회와 일본제국주의》, 문학과지성사, 1986, 163~177. 종방은 1930년 조선에 진출하면서 전남의 광주공장을 설립하여 조선에서 제사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광주와 근접한 회순광업소를 全南鑛業(주) 설립과 함께 인수하였다. 즉, 광주공장에 연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개발이었다.

75)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6. 9. 6. 설립. 총주식수 24,000 주, 동척광업 11,000, 金桂祚 9,000 소유. 김계조는 이 외에도 東洋燃料(주)의 대표자가 되는 등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한 인물이었다. 1938년 12월 21일 설립.

76) 朝鮮總督府, 《朝鮮鑛口一覽》, 1915.

1917년, 조선인 탄광 경영은 1915년과 커다란 차이 없이 공동소유의 광구 등록과 전국에 걸친 광산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조선인은 아직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개인소유의 광산경영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인은 경북 영일군에 弘淸三, 井野英助·園田豊·李能守, 鄭炳朝, 金洞郁, 金翔坤·金顯淳, 황해 봉산군의 趙命九, 평남 江西郡의 尹基益·李相弼·李明九·鄭觀朝·趙鍾緒, 平原郡의 金正民, 金志侃, 金寅榮, 韓三賢·金壽鉉, 黃準性, 金圭善, 安州郡의 李寅英, 李輔英, 李健赫, 朴東鎭·張永翰·洪冕憲·李東初, 함남 신흥군의 韓基鳳·韓稷淵, 함북 明川郡의 金泰允·金秀吉·藤井貞治 등이 보인다.<sup>77)</sup>

1921년 조선총독부는 ‘朝鮮人産業大會’<sup>78)</sup>를 개최하고 조선인의 산업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선전하였다.<sup>79)</sup> 1919년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의 한 방침으로 일제는 경제면에 있어서 ‘산업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 이 산업제일주의 정책에 대한 조선 자본가의 반응은 조선 산업의 발전을 선전, 광고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조선 내에서 일본의 산업 발달을 이용하고 조선인 산업의 위축을 설명할 뿐이었다고 하였다.<sup>80)</sup> 광산업에서 일제는 조선인 자본의 광산개발 허기를 선전하였지만 이미 유망 광산은 일본자본에 할양하고 난 후 개발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의 탄광에서만 가능한 조치였다.

1927년 탄광 소유상황은 조선인 탄광개발자가 수적으로 급감한 것이 두드러진다. 일본자본의 급증 속에 1917년까지 평남 강서군의 무연탄광을

77) 朝鮮總督府, 《朝鮮鑛口一覽》, 1917.

78) 《朝鮮日報》, 1921년 9월 15일. ‘조선산업조사회 개최에 際하여’. 이것은 1921년 총독부 주치 산업조사위원회에서 조선인 자본가에게 조선의 산업정책을 확립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79) 《東亞日報》 1921년 9월 16일. ‘조선인산업대회 건의안’, 이중 광업의 건의안은 試掘 규정개정, 광업의 지도 장려 기관 설치, 광업자금 융통, 화약류 구입 허용 및 광석의 운수에 대한 편의 도모 등이 있었다.

80) 오미일,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아카데미, 2002, 420쪽.

소유 경영하고 있었던 조선인 尹基益·李相弼·李明九·鄭觀朝·趙鍾緒는<sup>81)</sup> 1927년의 《鑛口一覽》에는 사라졌다.<sup>82)</sup> 1926년부터 본격 적으로 실시되었던 평남지방의 1927년 무연탄통합 정책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sup>83)</sup> 사이토(齋藤實)총독의 무연탄통합 정책 이전에는 유망한 평양의 석탄 산지를 조선인이 적은 자본이지만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개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것마저 일제는 용납하지 않고 석탄산업에서 조선인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조선인이 채탄하도록 허용된 지역은 일제가 개발가치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북 영일군, 경주군 등에 국한되었다. 우수 품질의 무연탄이 생산되는 평남지역에서 조선인 탄광 운영자는 1920년대 후반에는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었다.<sup>84)</sup> 1910년대 조선인이 경영하였던 평남 강서군 탄전은 조선무연탄광주식회사에 흡수되었다.<sup>85)</sup>

즉, 1920년대 후반 조선 최고의 무연탄을 생산하는 평양지역의 무연탄 자원은 조선무연탄주식회사와 조선무연탄광주식회사, 久原광업주식회사, 三菱製鐵株式會社, 明治鑛業株式會社가 완전히 장악하였다.<sup>86)</sup> 1935년에는 더욱 조선인 탄광경영이 위축되어 전국에 걸쳐 조선인 탄광 경영은 7 곳에 불과하였다.<sup>87)</sup> 탄업개발에 있어서 조선인 참여는 제한되었으며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석탄 산업에 대한 일본자본으로의 집중은 극단적인

81) 朝鮮總督府, 《朝鮮鑛口一覽》, 1917.

82) 朝鮮總督府, 《朝鮮鑛口一覽》, 1927.

83) 平壤商工會議所調查課, 〈平壤無煙炭概觀〉, 《平壤無煙炭資料集成》, 平壤商工會議所刊, 1942, 11쪽.

84) 朝鮮總督府, 《朝鮮鑛口一覽》, 1927. 평남지역 조선인 탄광경영자는 1명도 기록되지 않음.

85) 《朝鮮無煙炭鑛株式會社 營業報告書》(1), 10쪽.

86) 朝鮮總督府, 《朝鮮鑛口一覽》, 1927, 61~81쪽.

87) 朝鮮總督府, 《朝鮮鑛口一覽》, 1935. 전남 화순군 朴喆柱, 경북 영일면 許億, 경주군 李圭平, 함북 江界郡 金龍宗, 함남 갑산군 申大來, 함북 慶源군 南龍吉, 姜載陽에 불과하였다.

형태를 보였다.

#### 4. 맺음말

일제는 1906년 <鑛業法>과 1915년 <朝鮮鑛業令>을 통해 사실상 한국의 광산자원 장악을 합법화하였다. 광업령 32조에 <광업을 위해 필요한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하여 광산 개발을 위한 일본 자본의 토지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10조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또는 광업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광업의 출원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광업권 허가를 총독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광업의 개발은 형식적으로 자유로워졌으나 그 개발권은 일본 자본에 제한되어 주어졌다. 즉 先願主義, 選別主義가 동시에 적용되어 형식적으로는 먼저 등록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先願主義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選別主義에 의해 주요광산이 先願主義의 예외조항으로 묶여 있었다.

이렇듯 일제는 1910년대 법령제정에 의한 한국 석탄자원 장악을 합법화한 후, 1918년 지질조사소, 1922년 연료선탄광연구소를 창설하여 국내의 광산자원 조사를 일반화하고 이 연구소의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 대자본에 유망탄광을 불하하였다. 일반인의 출원과정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연료선탄광연구소의 수입원이 되었다. 일제의 광산자원 장악 합법화에 의해 일반인의 광산개발은 일제의 차별적인 허가와 수수료 납부를 감내해야 했다.

1910년대 조선인 탄광 소유 현황은 평남과 함경도 일대의 주요 탄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제가 완전히 장악하고자 했던 평양 무연탄 산지인 강서군 일대를 조선인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었으며 이 외의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탄광 경영의 예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평양지역에서 탄광을 경영하는 조선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

왔다.

이후 1930년대 일제는 만주침략과 중일전쟁 등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무차별적 석탄수탈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통합회사 설립, 석탄생산 할당제를 통해 석탄자원의 완전한 통제 상태를 유지하였다. 석탄생산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석탄 배급제를 통해 일반인의 석탄사용은 극도로 제한되었으며 그 사용 목적은 일제의 침략 전쟁 지원일 뿐이었다.